

예천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예천군의회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
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
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및 「예천군
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. 1. 4.

예 천 군 의 회 의 장



1. 개정 이유

- 「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담당관을
예천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계공무원 범위 변경 (안 제2조제2호)

- 실·과장 → 실·과장 및 담당관

3. 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마. 입법예고 :

바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사. 성별영향평가 :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(☎054-650-6596, FAX 054-650-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hookor93@korea.kr

의견제출서				
자치법규명		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견 제출자	성명/단체명	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	전화번호	
	주 소			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				
찬·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.				

예천군 조례 제 호

예천군의회에 출석 ·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의회에 출석 ·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실 · 과장”을 “실 · 과장 및 담당관”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 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범위)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군수의 보조기관 중 <u>실·과장</u>	2. ----- <u>실·과장</u> <u>및 담당관</u>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
【지방자치법】

- 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